

제 1705 호
1992.12.2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이 삼 배
편집인 : 관보관 이 삼진
전화 : 731-6111~3
인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화 : 273-6111~3

시보

차례

● 목 차

제 2965 호	서울특별시일근로자우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	2
제 2967 호	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료에중개정조례	2
제 2968 호	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료에증개정조례	2
제 2969 호	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료에증개정조례	3
제 2970 호	서울특별시청소사업물부설회로에증개정조례	4
제 2971 호	서울특별시세우포사업물부설회로에증개정조례	4
제 2972 호	서울특별시의회사부처설치료증개정조례	5

증	1992/12/16	76	36	56	56	56	56
발							

1. 이 공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이로는 공무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노는거울 순간이요 일한보람 오래간다”
2500

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966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

징수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중 아파트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단 위	사 용 료 을			비고
		근로자 회관	공단근로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	부녀복지관	
아 파 트	임대료	12~13평형 15~16평형	1세대 1월 "	22,000원 26,400원	-
	임 대 보증금	12~13평형 15~16평형	1세대기준 "	44,000원 52,800원	-

부 칙

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①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967호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
공업기정"을 "지방시설기정·지방공업기정
·지방환경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"으로
·"지방토목기화·지방기재기화·지방전기기
화 또는 지방화공기화"를 "지방토목기화·
지방기재기화·지방전기기화·지방화공기화
·지방환경기화 또는 지방보건기화"로 한다.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968호

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

설치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한강공원관리사업소"를 "한강
관리사업소"로 한다.

제1조 중 "한강공원관리사업소"를 "한강
관리사업소"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"한강공원"을 "한강"으로
한다.

부 칙	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 중 “안양”을 “가양”으로 하고, “하수처리장(이하 “처리장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하수처리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”로 한다.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1.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(별표)의 교통국 제1호·하수국 제18호·제20호 내지 제33호 및 제47호의 수임기관란 중 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”을 “한강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	제2조 중 “처리장”을 “사업소”로 한다.
2.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제3조 중 “처리장은”을 “사업소는”으로 한다.
제9조 중 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”을 “한강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	제4조의 제목 “장장”은 “소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처리장”은 “사업소”로 “장장”은 “소장”으로, “하수처리장장”은 “하수처리사업소장”으로, “안양 및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장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장장”은 “소장”으로, “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장관리인으로서”를 삭제하며, “장무”는 “소관사무”로 한다.
③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행위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	제5조 중 “처리장”은 “사업소”로 한다.
④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를, 인용한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를,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을, 인용한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	부 칙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	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1992. 12. 2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⑬	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(별표)의 하수국 제3호·제6호·제8호 내지 제10호·제13호 내지 제15호·제17호 및 제44호·제45호의 수임기관란 중 “하수처리장”을 “하수처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③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장이 행한 행정처분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하수처리장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하수처리사업소장의 행위 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	③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장이 행한 행정처분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하수처리장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하수처리사업소장의 행위 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④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하수처리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를, 하수처리장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	④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하수처리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를, 하수처리장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◎서울특별시조례제296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청
제명 중 “하수처리장”을 “하수처리사업소”로 한다.	